

국 민 평 생 직 업 능 력 개 발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6. 4.

고 용 노 동 부
(직업능력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대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기간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에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민간자격 취득 정보를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 . ~ .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단서 중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의 자격 정보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자격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 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 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 청하는 <u>경우 또는 2024년 7월 1</u> <u>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u> <u>청하는 경우에는</u>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 ----- ----- ----- ----- -----. ----- <u>경우에는</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270